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체계 분석: 미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IRM-Related Laws with US

김 성 근 (Sung Kun Kim)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 남 규 (Nam Kyu Ahn)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이 진 실 (Jin Sil Lee)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요 약

정보화에 대한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효과는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각각 정보자원관리 또는 IT 제대로 관리하기 노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보자원관리에 기반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IT 관리를 위한 법의 성격 및 목적, 수단, 조정 및 지원 부처의 실체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추진되다 보니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자원관리 관점에서 미국과 국내의 법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 정보자원관리 관련 노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요소를 도출한다.

키워드 : IT 관리, 정보자원관리, 정보화 관련 법

I. 서 언

IT 조직을 바라보는 경영진 및 현업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이제껏 IT조직이 제안한 대로 제법 많이 투자해왔는데 우리 조직에 기여한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왜 그토록 기술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실패로 그치는 게 많은가? 기술집약적 IT 자원을 관리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거 큰일 아닌가? 향후 새로운 기술이 과도처럼 밀려올 터인데 또 얼마나 더 휘둘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답을 CIO로부터 찾지 못한 많은 CEO들은 IT에 대한 투자를 이미 줄이기 시작했다. 또 어떤 CEO는 IT 조직에게 이때까지의 투자에 대한 성과를 입증해 보이기 전에는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정보산업 경기의 급속한 침체의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다(전자신문 2004. 12. 17; Carr 2003).

경영진의 시각에서 바라본 IT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IT 프로젝트의 높은 실패율(Standish Group 2001), 경영진 및 현업으로부터

터의 불신(Carr 2003; Power 2002; Aponovich 2002), 일부 현업부서의 기술적 독립에 따른 통합관리의 어려움(UK Cabinet Office 2000; Lutchen 2004), IT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와의 관계 설정 미흡(Lutchen 2004; Overby 2004), 그리고 IT 조직의 관리 운영의 미흡(UK Cabinet Office 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IT 관리 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Managing IT as a business(IT 조직을 사업 조직처럼 운영하기 또는 IT 제대로 관리하기 등으로도 불림)'가 해결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Young 2003; Overby 2004; Lutchen 2004).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는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라는 형태로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다(Bertot 1997a, 1997b; McClure 1997; Brown 2000). 이 두 노력은 목표와 추진 수단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조직 경쟁력의 확보 및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 바로 정보기술임을 조직 전체가 인식하고, IT 조직이 주도하고 경영진 및 현업은 무관심하게 동조하거나 수동적으로 사용만 하던 예전의 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의 각 주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을 지는 공동의 관리 노력을 취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새로운 관리 방안을 도입할 때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보자원관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정보자원관리 개념을 관련 법·제도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이를 제반 정보화 노력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Beachboard 1997; Bertot 1997a; McClure 1997). 대표적인 노력은 1996년에 제정된 정보기술관리혁신법(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ITMRA)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에서도 정보자원관리에 기반을 둔 법·제도를 위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 정국환(1996), 황주성 등(1998), 황종성(2002)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전자정부를 지원하는 정보자원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공공부문의 정보자원관리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정보자원관리의 본질과 구체적 실행요소, 그리고 추진 목표와 수단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일부 부처에서 정보화 관련 법의 입법 및 개정 노력을 착수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여론이 형성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우고 있다. 특히 정보화 관련 매스컴에서 이의 입법 노력을 다루는 기사가 최근 급속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전자신문 2004.11.24, 2004.11.29; 디지털 타임즈 2004.12.3, 2004.12.8, 2004.12.16). 이들 언론은 효과적 IT 관리를 위한 법의 성격 및 목적, 수단, 조정 및 지원 부처의 실체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처간에 상충되는 부분의 협의 및 조정 기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 IT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관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정보자원관리 관련 노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자원관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자원관리 관련 미국 및 국내 법을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공공부문의 효과적 IT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의 CIO로 하여금 기존의 IT 관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나갈 노력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내 IT 관리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6개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II장에서는 정보자원관리와 정보화 관련 법규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IV장에서는 미국과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를 심층 분석 하였다. V장에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은 마지막 VI장에 제시된다.

II. 기존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보자원관리 또는 IT 제대로 관리하기와 같은 새로운 IT 관리 노력에 관한 문헌과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노력에 관한 문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1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기존 연구

정부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 이슈이다. 특히 최근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민의 개별적 욕구에 적합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므로 이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효과적인 정보관리 경험 및 스킬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담당하지 못해왔다.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자원의 낭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한 곳은 미국 의회의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즉 감사원)¹⁾이었다. GAO는 1994년 당시 지난 12년간 미국 행정부에서 2,000억

불 이상의 거금을 정보화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의료비를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무자격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관리 미비는 행정서비스 질 저하, 고비용, 낮은 생산성,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위험, 서비스 개선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실패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GAO(1994)는 정보관리 노력의 혁신으로 정보자원관리를 주창하였다. 나아가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진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추진하여 큰 성공을 거둔 11가지의 정보관리 실행 방안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효과적 정보자원관리 실행방안

주요 내용
◦ 정보관리 노력의 변화를 시급하게 모색할 필요성의 인식 및 확산
◦ 현업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현업 스스로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 행동으로 옮기고 추진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 정보관리의 전략적 계획을 조직의 임무와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 주요 임무 전달 과정의 수행 성과를 측정
◦ 프로세스 개선에 치중하기
◦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투자의 개념으로 관리
◦ 계획 수립, 예산 수립, 그리고 평가 과정을 통합하기
◦ 현업과 정보관리 요원을 고객·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로 설정하기
◦ 최고 관리자의 협력자 역할인 CIO 직제 두기
◦ 현업과 정보관리 전문가의 스킬과 지식의 향상

이러한 정보자원관리 노력은 정보라는 자원 그 자체를 강조한 초기의 정보자원관리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초기의 연구자들은 정보는 조직의 중요한 자원이므로 잘 다루어져

1) 2004년 7월초에 그 명칭이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변경되었음.

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보자원관리를 주장하였다. McLeod and Brittain-White(1988)는 ‘자료와 정보가 조직의 주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다른 자원의 관리에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을 이 자료와 정보의 관리에 적용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Kerr(1991)도 이와 유사하게 정보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아울러 조직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의 정보자원관리는 정보가 조직의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6년 이후 미국 행정부에서는 정보자원관리를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자원을 정보 그 자체 및 관련 자원(인력, 장치, 재원, 그리고 정보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보자원관리 노력을 법으로 규정할 것이 바로 1996년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정보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해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의 최고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가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노력이 민간 분야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IT 부문을 사업조직처럼 관리하기(Managing IT As a Business)’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Overby(2004)는 오늘날의 조직은 IT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한 경영진이 더 이상 IT 조직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분명한 사업관리 원칙이나 분명한 책임소재 없이 마치 블랙박스처럼 -것을 용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가능한 빨리 IT 조직을 사업조직처럼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Weill and Ross 2004). 즉, 기존의 IT 조직은 경영진 및 현업조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비용센

터(credibility-damaged cost center)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제 잘 연계된 사업파트너 조직(aligned business partner)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Gartner의 2003년 1월 전략 분석 보고서에 특집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Running IS Like a Business: Introducing the ISCo Model’ 보고서에서 IT 조직을 지원 목적의 비용센터로 바라볼 때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는 내부 서비스 제공 조직(internal service company: ISCo)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Young 2003).

이제 정보기술 관리는 IT 관리자만의 몫은 아니다.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경영진의 주요 사명에 속한다(Khandelwal 2001). Brown(2000)은 정보화 노력이 제 궤도에 올라가 있는지, 이러한 노력이 실제 효과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이제 최고 경영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Lutchen(2004)도 IT 조직을 사업조직처럼 관리(Managing IT as a Business)하려는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전환은 CEO가 수행할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IT 조직을 사업조직처럼 관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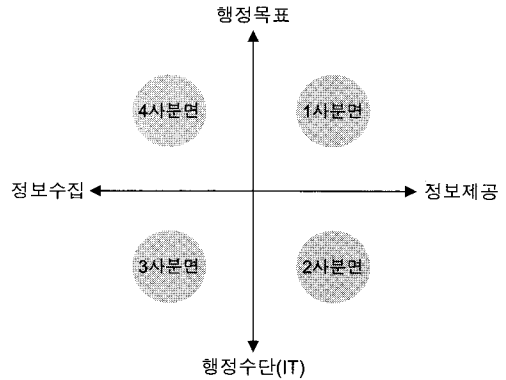
CEO가 수행할 역할
◦ 정보기술을 조직의 주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기
◦ IT 조직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간주하기
◦ IT 전략을 조직전략과 연계시키기
◦ 사업단위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IT 필요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 고객서비스, 적시 배달, 고품질,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의 문화를 제도화
◦ 조직에 가치를 제공하여준 결과를 토대로 IT 관리자를 보상해주기

IT 조직을 사업처럼 관리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앞에서 지적한 정보자원관리 노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기술을 조직 목표 달성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점, 정보화 추진 방향을 조직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 정보화 투자의 결과는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보화 추진에 있어 현업·경영진과 IT조직 간에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한다는(현업이 필요로 하는 IT 요구사항의 결정은 현업 조직이 스스로 하게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은 IT 조직이 제공하게 함) 점 등에서 일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신동향은 이제까지의 정보기술 중심의 관리 노력에서 정보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지향하는 정보자원관리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2.2 정보화 관련 법에 관한 기존 연구

실제 행정서비스에 있어 정보 및 정보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정보화에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곤 했었다. 여기서는 미국과 국내의 정보화 관련 기존 법규들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보화 관련 법의 위상도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특정 법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분석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 위상도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국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수집 서비스,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 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는 정도, 그리고 조직의 목표(즉,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 함)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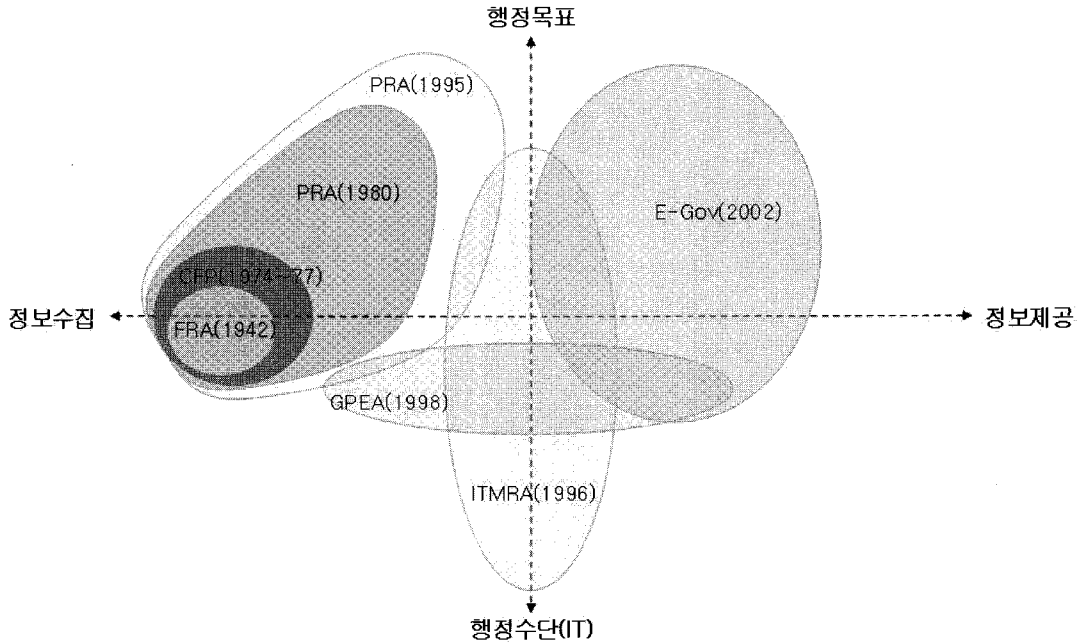
<그림 1> 정보화 관련 법의 위상도

이 위상도의 1사분면에는 정보제공을 통해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4사분면은 정보수집을 통한 행정목표 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사분면과 3사분면은 각각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수단의 활용과 정보수집을 위한 행정수단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사분면에 속하기 보다는 특정 축에 몰려 있는 내용은 다른 축과는 큰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Y축(즉, 행정목표와 행정수단)에 몰려 있을 경우 이는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이라는 측면보다는 IT라는 수단을 이용해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이 위상도를 기초로 미국 및 국내 정보화 관련 법을 분석하기로 한다.

2.2.1 미국의 정보화 관련 법규 분석

미국은 자료와 정보의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강구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1942년 연방보고서법(Federal Reports Act: FRA)에서부터 2002년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에 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1942년에 통과된 연방보고서법(FRA)은 민간 및 기업체의 보고서 제출 부담과 행정기관



〈그림 2〉 미국의 정보화 관련 법·제도의 위상

의 자료관리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행정기관의 자료 요청 시 제한을 두는 것이 목적이며, 이것은 정보수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방보고서법은 <그림 2>의 정보수집 부분인 X축의 좌측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다.

1974년에 설립된 연방문서작업위원회(Commission on Federal Paperwork: CFP)도 연방정부가 민간 부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때 최소한의 부담과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연방문서작업위원회도 이 영역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정보관리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잘 지키는지를 모니터링 할 부서의 신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보고서에 따라 새로운 입법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80

년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을 정부 문서 작업에 관한 주요 정책의 입안과 감독 부서로 지정하고, 개별 행정기관에게도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정보수집이 수행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실제 문서감축법에 제시된 예산국의 역할과 책임은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전반적인데 까지 확대되었다. 즉, 연방의 정보정책, 원칙, 표준, 지침 등의 개발 및 구현, 아울러 통계활동, 자료관리, 프라이버시, 기관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자료처리 자동화 도구나 기술의 획득 및 활용까지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보수집의 효과적 노력은 문서감축법 및 그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행정기관의 궁극적 목표인 행정서비스 목표를 훨씬 더 강조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보기술과 같은 효과적 수단의 강구는 일부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노력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Y축의 밑으로는 크게 확장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비해 2002년에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화 노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미 행정부의 국정수행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촉진하려는 의도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 보유 정보에 대한 확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X축의 우측이 주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정보제공의 활성화가 행정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Y축의 상단 영역도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의 효과적 획득 및 활용 등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Y축의 하단 부분은 일부분만 포함한다.

1998년에 제정된 정부문서업무제거법(Paperwork Elimination Act)은 이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이라는 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기술 환경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전자매체 형태의 정보 제공 및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5년 이내 완비되도록 하는 한시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6년에 제정된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은 정보기술의 활용 및 관리가 행정서비스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정보기술이라는 수단과 행정서비스 목표의 추구를 연계시킨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보수집이든 정보제공이든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활용 및 관리를 조직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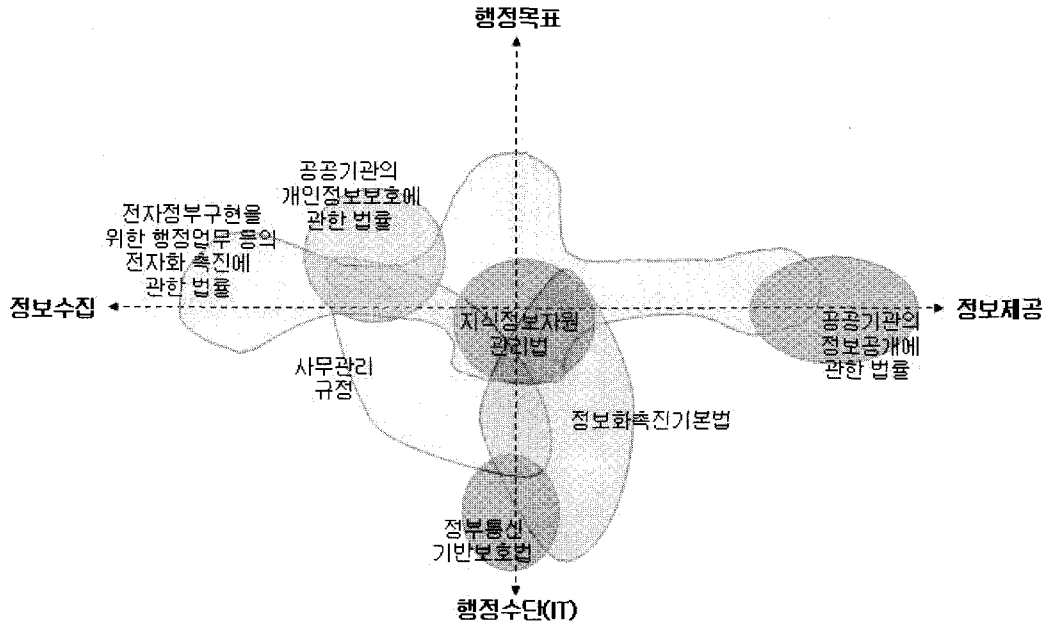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은 정보자원 관리 노력을

조직의 수행성과 향상과 결과 지향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기술 획득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도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수행할 책임의 명시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아키텍처 기반의 노력이 제시되고 있다. Bertot and McClure(1977)은 이 법의 제목에 ‘정보자원관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정보자원관리를 행정기관의 핵심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행정기관의 성과에 연계시킨 점은 조직의 여러 활동(IT 아키텍처 개발, 자본투자계획, 전략적 정보시스템 계획수립, 현업업무 지원 및 리엔지니어링)에 이 정보자원관리가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은 Y축의 하단과 Y축의 상단을 연결시킨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폐기 또는 효력 상실된 일부 법규를 제외하면 미국의 정보화 관련 법규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정보수집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목표를 추구하는 문서감축법 기반의 법, 정보제공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목표를 추구하는 전자정부법, 그리고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서비스 목표를 추구하는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 법체계는 나름대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들 법 간에는 서로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2.2.2 국내의 정보화 관련 법규 분석

국내에서도 정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표



〈그림 3〉 국내 정보화 관련 법·제도의 위상

현함)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국내의 정보화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먼저 1994년에 제정되어 1999년에 일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수집 당시의 목적에 맞도록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정보수집 시 개인정보공개와 관련된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X축의 좌측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996년에 제정되어 2004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X축 우측에 치우친 형태이다.

2001년에 제정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정부적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통신체계 확립을 위한 부처의 역할과 책임, 이를 위한 자원의 공유 및 공동 노력 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Y축의 하단 영역에 치우쳐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식정보 관리법의 경우 보존과 활용가치가 있는 지식자원을 디지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식정보자원과 관련된 책임 소재 명시, 자원의 활용 여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식정보자원의 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 및 수단에 대한 언급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주요 대상을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식으로 전환할 내용으로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상도의 원점에 가까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문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Y축의 하단이 주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단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제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행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X축의 우측 영역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목표와의 연계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 원칙, 행정관리의 전자화, 대국민 서비스의 전자화, 문서업무 감축 추진,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전자정부법은 정보 자원의 수집과 제공, 그리고 행정목표의 달성과 제한적이나마 효과적 수단의 활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법이 성공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해 앞에서 제시된 다양한 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는 갖추게 되었으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기술 수단의 측면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과 다른 법과의 중복 및 상충 내용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2.3 정보화 관련 미국 및 국내 법 비교분석

이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법체계가 각각의 축을 이루며, 구조적

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국내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들은 상호 중복 및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며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서비스 목표를 추구하는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국내에서도 정보자원관리에 기반을 둔 법·제도를 위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 이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정국환(1996)의 정보자원관리 체계의 도입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 이후 여러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김동욱, 1997; 유시완, 이연희, 1999). 나아가서 황주성, 권헌영(1998) 및 황종성(2002)은 공공 부문의 정보자원관리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정보자원관리의 본질과 구체적 실행 요소, 그리고 추진 목표와 수단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III.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우리는 앞에서 새로운 IT 관리 방안으로 정보자원관리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미국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법적 장치로 마련해두고 체계적으로 적용해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적 장치도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정보자원관리 분석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법적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정보자원관리 기존 문헌을 토대로 정보자원관리 분석 프레임워

크를 제시한다.

어떤 형태의 관리 노력이든 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Weill and Ross(2004)는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IT Governance란 경영자(주체)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목표 및 접근) 조직의 자원(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수단)을 수립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우리도 정보자원관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관리의 목표 및 접근, 관리의 주체, 관리의 대상, 그리고 관리를 위한 효과적 수단을 추출하였다.

정보자원관리 노력도 이 네 가지 개별 요소

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수행주체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조직의 경영진(현업 관리자 포함), CIO 및 IT관리 조직, 그리고 정보관리 노력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부처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 공공 기관의 경우, 이 세 번째 조직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의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국, 미국의 예산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체의 경우, CFO와 기획실 조직이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최근 들어 CFO 조직에서 정보화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크게 참여하는 경

<표 3> 정보자원관리 분석 프레임워크

IRM 요소	IRM 세부요소	내 용
주체: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관장의 책임	정보자원관리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정보자원관리 노력은 기관장의 책임에 속함.
	감독·조정 부처의 책임	정보자원관리 노력은 통합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역할을 수행할 부처와 그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야 함.
	CIO·추진 조직의 책임	최고 관리자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때 지원과 협력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와 조직의 역할이 필요함.
목적: 조직목표에의 기여	성과지향적 관리	정보자원관리 노력은 결과 지향적이어야 하고, 특히 조직의 임무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Capital Planning & Investment Control	정보기술 획득은 투자의 개념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계획했던 효과가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통제 노력이 필요함.
	평가 및 개선	정보자원관리 노력은 단계별로 평가되어야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관리대상: 정보자원의 통합성 강조	업무·정보 자원의 통합관리	정보기술 자원과 업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정보자원 공유	정보자원의 획득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고 이들 자원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때 그 가치를 더욱 발하므로 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기관 간의 공동 노력	기관 간에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간의 연계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촉진하여야 함.
수단: 효과적 수단 활용	Best Practice 활용	성공 사례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추진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
	표준·기준 활용	정보자원의 관리에 일정한 기준과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술과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혁신·개선 방안 추구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스킬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288명의 CFO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그 중 58%가 IT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ponovich 2002). 이는 IT 투자에 기업의 많은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리의 목적은 관리의 목표와 접근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정보자원관리 노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접근 방향으로는 정보화에 대한 지출도 일종의 투자이므로 효과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아울러 진행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관리 통제해나가야 한다. 또한 관리 노력은 관리통제로 끝날게 아니라 관리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번의 노력에 반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관리 대상도 관리에 포함될 요소, 대내적으로 통합될 대상, 그리고 대외적으로 통합될 대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 수단은 성공사례의 활용, 기준 및 표준의 활용, 그리고 개선노력의 강구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보자원관리 노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표 3>과 같이 제시한다.

IV. 정보자원관리 관련 개별 법 분석

4.1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개별 법 분석

앞 장에서는 정보자원관리 관련 요소들의 포함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정보자원이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IT 획득의 혁신과 IT 관리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을 분석한다.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

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계기로 국가정보화 노력이 본격화되고, 같은 해에 발표된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이 전자정부의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행정부에 있어 정보기술의 활용은 본격화되었고,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정보기술의 도입과 관리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에 의회 주도로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이 제정되었다.

실제 이 법은 연방획득혁신법(Federal Acquisition Reform Act)과 함께 입법되었고, 나중에는 이 두 법을 포함하여 Clinger-Cohen Act 이라고 불리어졌다. 실제로 이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은 정보기술의 도입 및 관리에 주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정보기술의 도입 및 관리를 조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투자계획 및 관리통제 절차의 마련, 결과 지향적 관리 노력 등이 취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아키텍처 기반의 접근을 강제화한 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정보기술의 도입 및 관리의 목표, 즉, 정보자원관리 접근을 제도화한 것이며, 아키텍처 노력에 대해서는 이 정보자원관리의 효과적 수단으로 아키텍처의 개발 및 활용을 CIO 역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키텍처 노력에 대한 자세한 개념, 접근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은 OMB A-130 행정회람에 나와 있다. 즉,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의 주요 성격은 정보기술의 획득 및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관리 노력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본투자계획 및 투자관리(capital planning and investment control)과 아키텍처 관련 활동은 구체적으로 이 법의 세부 행정명령인 A-130 회람 등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 4>는 정보기술관리혁신법에 담긴 정보자원관리 요소의 포함 여부를 분석한 내용이다.

<표 4> 정보기술관리혁신법 분석 결과

IRM과의 관계		
주체: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관장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에 규정된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시킴 ◦ 기관의 장은 IRM 노력을 수행함에 있어 가치를 극대화하고 IT 획득에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여 구현하도록 요구 ◦ 요구된 전략적 IRM 계획서에 당초의 목적, 업적평가, 목표 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IT 획득 프로그램을 적시하도록 요구 ◦ IRM 활동에 아키텍처 접근으로 하도록 규정 ◦ IT 획득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활용하도록 요구됨
	감독·조정 부처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M 노력을 수행함에 있어 업적평가(performance) 지향적, 결과(results) 지향적 관리 노력을 강구하도록 ◦ GSA 장에게 주어졌던 정보기술제품 구매 권한을 OMB로 넘김 ◦ 상무성과 기술 표준원(NIST)의 기술표준 및 지침 수립 및 적용을 감독할 책임 ◦ 정보기술 획득의 여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
	CIO·추진 조직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O 직제의 신설과 이 CIO 역할과 조건에 대해 규정 ◦ CIO로 하여금 아키텍처의 개발, 유지, 활용 촉진하도록 규정 ◦ CIO의 주요 역할은 정보자원관리 노력임을 명시 ◦ IT 획득에 단순명료하고 분명한 절차의 적용
목적: 조직 목표에의 기여	성과지향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획득, 활용, 처분의 개선을 통해 조직 목표 달성에의 기여 목표 ◦ IT 투자의 여러 대안을 개발 및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설정·활용
	Capital Planning & Investment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투자의 선정, 관리, 그 결과의 평가에 자본투자 개념을 적용 ◦ 정보자원관리 노력에 재무적 책임성 부여 ◦ IRM의 효과적 수행과 효과적 IT 투자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삭감 및 지출 예산 승인 등을 통해 관리적 조치 집행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 관리에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기관, 외국조직, 민간 분야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활용 ◦ 정보기술 활용의 성과평가를 기관별로 평가하고 기관장에게 공개 ◦ 유사한 활동과 조직의 업무성과와 비교평가 하도록
관리대상: 정보 자원의 통합성 강조	업무·정보 자원의 통합관리	◦ 기관의 전략적 목표 및 IRM 목표 달성을 위한 IT 형상화 수립
	정보자원 공유	◦ IT 투자가 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기관 간의 공동 노력	◦ 여러 부처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IT 제품이 있을 경우 공동 구매의 권장 및 이 경우 대표 공동구매 기관의 지정 가능
수단: 효과적 수단 활용	Best Practice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의 획득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의 활용을 권장 ◦ 유사한 활동과 조직을 benchmark하여 비교평가
	표준·기준 활용	◦ 기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및 활용을 권장
	혁신·개선 방안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혁신 및 외부조달 가능성의 사전 검토 ◦ 정보자원관리 핵심인력의 채용 및 훈련

4.2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 분석

국내에서도 정보기술의 효과적 도입 및 관리에 관련된 법이 존재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이 바로 이에 속한다. 아래에서는 이

들 법들에 포함된 정보자원관리 개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5>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역할과 책임 관점에서 보면, 중앙행정부처의 장에게 해당 부서의 정보화에 대한 책임

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부처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권한 및 부처간 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 책임관(CIO) 역할도 명문화하고 있다.

정보자원의 통합성 관점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정보기술의 활용과 연계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과적 수단으로는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의 표준 및 정보보호시스템

에 관한 기준의 고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가 조직의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과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역할과 책임의 관점에서도 기관의 장에게 정보화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정보화 노력의 책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보자원의 공유 관점에서도 정보의 공유 외 기관간 총괄적 정보자원의 공유에 대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라고 하겠다. 효과적 수단에서도 기술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무혁신 및 IT인력 등의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

<표 5> 정보화촉진기본법 분석 결과

IRM과의 관계		
주체: 역할과 책임 명문화	기관장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명시 ◦ 공공기관은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립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
	감독·조정 부처의 책임	◦ 정통부장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 평가
	CIO·추진 조직의 책임	◦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 역할의 명문화
목적: 조직 목표에의 기여	성과지향적 관리	
	Capital Planning & Investment Control	평가 및 개선
관리대상: 정보 자원의 통합성 강조	업무·정보 자원의 통합관리	◦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정보기술의 활용과 연계
	정보자원 공유	◦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야 함
	기관 간의 공동 노력	
수단: 효과적 수단 활용	Best Practice 활용	◦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표준·기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정보통신표준화의 추진
	혁신·개선 방안 추구	◦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다음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자정부법을 분석한다.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 전자정부법도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우선, 역할과 책임의 관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조직목표에의 기여 관점에서는 민원인 위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정보자원

의 통합성 관점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을 방지하는 구체적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효과적 수단으로는 전자적 처리에 맞게 행정기관의 업무를 적합하게 혁신하려는 노력과 외부의 개발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자정부법도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 명시, 정보자원의 활용 및 효과적 수단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개념적인 내용으로 이 역시도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보화 추진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행정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표 6> 전자정부법의 분석 결과

IRM과의 관계		비고
주제: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관장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한 역할을 명시 정보화 촉진시행 계획과 전자정부 계획이 일치(중장기 사업계획 고려)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명시
	감독·조정 부처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부 사업을 정보화 추진 위원회의 사업의 일부분으로 귀속시킴
	CIO·추진 조직의 책임	
목적: 조직 목표에의 기여	성과지향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 위주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강조
	Capital Planning & Investment Control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사업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 추진 위원회와 국회에 제출
관리대상: 정보 자원의 통합성 강조	업무·정보 자원의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조직 및 업무 절차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함 (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
	정보자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의 원칙을 제시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이용절차를 명시
	기관 간의 공동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과 운영
수단: 효과적 수단 활용	Best Practice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 사업의 추진 우수 정보화 시스템의 확산 행정지식관리
	표준·기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업무용 컴퓨터의 표준화
	혁신·개선 방안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게 혁신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외주의 원칙

4.2 미국과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 비교

미국과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의 관련 법 체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목적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보자원관리 전체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정의가 미비했다. 또한 정보자원관리가 조직 목표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자원의 통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으나 실천적인 방안 및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효과적 수단의 활용 부분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실천적인 방안 및 대안의 강구 등이 미비하다.

분석 결과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는 미국의 법 체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보자원관리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관련 법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정보기술과 행정목표를 연계하는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는 정보자원관리 개념 및 사상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정보자원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요소 도출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노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법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 법의 개폐 작업을 통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방안이 더 나은 대안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에 주관 부처의 구조적 상황, 법 기술적 조건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등 국가 정책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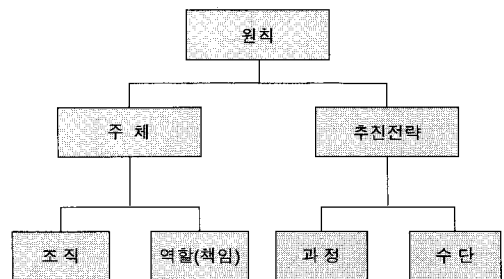
판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정보자원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보자원관리의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규로 반영되어야 할 법적 요소를 모두 도출해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제도와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정책적 환경 및 행정체계 등을 분석하여 정보자원관리 12개 세부 요소에 총 38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들 일부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표 6>을 참조하기 바란다.

정보자원관리와 관련한 개별 행정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에 담겨야 할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를 추출하였다. 우선, 정보자원관리는 기관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관장에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정보자원관리는 조직목표와 부합되어야 하며 이르기 위해서는 정보자원관리 관련 의사결정 시 조직목표와의 부합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자원관리 노력은 아키텍처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독·조정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우선, 정보자원관리 관점의 감독·조정 부처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



<그림 4> 정보자원관리 기반 법적 요소의 분류

〈표 7〉 정보자원관리 법적 요소 및 분류

조직 목표		주요 내용	분류
주체: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관장의 책임	①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정보자원관리는 중요하며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함) ② IRM은 조직목표와 부합하도록 총괄적 노력으로 수행되어야 함 ③ IRM 노력을 아키텍처로 접근하여야 함	원칙 역할 원칙
	감독·조정 부처의 책임	① IRM 관점의 감독·조정 부서를 명확하게 해야 함 ② 감독·조정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함 ③ 감독·조정 목표를 국가 정보화 최적화로 설정하여야 함 ④ 정보통신기술의 표준 및 기준에 관한 부서와의 협의 ⑤ 국회에 IRM 수행 성과 및 이슈의 정기적 보고 의무	조직 원칙 역할 역할 역할
	CIO·추진 조직의 책임	① CIO의 제도화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역할과 조건을 규정해야 함 ② CIO, 행정부 총괄 CIO 및 CIO 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③ CIO가 아키텍처 개발·유지·활용·촉진을 구체화하는 것을 책무로 함	원칙 역할 역할
목적: 조직 목표에의 기여	성과지향적 관리	① 정보자원관리 노력의 개선을 통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 ② 정보자원 투자에 다양한 대안 개발 ③ 정보자원 투자에 대한 효과 측정의 기준 설정 및 활용	원칙 수단 수단
	Capital Planning & Investment Control	① 정보자원관리 노력에 자본 투자의 개념 적용과 재무적 책임성 부여 ② 정보자원관리의 전 과정에 모니터링 및 보완 노력의 필요성 ③ 실제 정보자원관리 수행 결과와 사후 관리 ④ 정보자원관리 수행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원칙 과정 과정 수단
	평가 및 개선	① 정보자원관리 수행 결과의 평가는 조직 목표와 연계 ② 정보자원관리 평가를 기관별로 비교 분석 및 공개 ③ 해당 부서의 문제점 개선 자체 노력에 대한 평가	원칙 수단 과정
관리대상: 정보자원의 통합성 강조	업무·정보 자원의 통합관리	① 업무 계획과 정보자원관리 계획의 일체화 ② 업무 및 정보자원관리의 형상화(configuration)를 현재(As-Is)와 미래(To-Be)로 구분하여 확보	원칙 수단
	정보자원 공유	① 정보자원 획득 및 활용은 global optimization을 우선 적용 ② 정보자원 보유 현황 자료의 작성 및 공유 ③ 정보자원 공동 활용 요청 시 협의	원칙 수단 과정
	기관 간의 공동 노력	① 범 부처 정보자원 획득 시 공동 구매를 우선 고려 ② 정보자원 획득 시 기관 내 또는 다른 기관과의 공유 ③ 정보자원 획득이 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원칙 수단 과정
수단: 효과적 수단 활용	Best Practice 활용	① 정보자원 획득 시 우수 사례 사전 검토 및 제도화 ② 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③ 정보자원관리 우수 사례의 Database화	원칙 과정 수단
	표준·기준 활용	① 정보기술 활용 시 국내외의 기술 표준 및 기준의 사전 검토를 제도화 ② 정보기술 표준 및 기준을 토대로 자체 기술 프로파일 구축 및 활용 ③ 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기술 표준 및 기준의 발전 동향 분석	원칙 과정 수단
	혁신·개선 방안 추구	① 정보자원관련 의사 결정 시 혁신적 대안의 모색 제도화 ② 민영화 및 아웃소싱의 사전 검토 ③ 가능한 검증되고 상용화된 제품의 활용 권장 ④ 정보자원관리 핵심 인력의 확보 및 교육 훈련 제도화	원칙 수단 수단 수단

재, 이 부처의 감독·조정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독·조정 목표를 국가 정보화의 최적화에 두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통신 기술의 관련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자원관리 노력의 수행성과 및 이슈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들 38개의 정보자원관리 법적 요소가 어떻게 법에 반영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의 성격 및 상호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를 <그림 4>에 제시된 정보자원관리 기반 법적 요소 분류체계에 적용하였다. 즉, 이들 법적 요소는 크게 원칙, 주제, 그리고 추진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 주제는 조직과 역할(책임 포함)로 세분화되고, 추진 전략은 과정과 수단으로 세분화된다.

앞에서 추출된 38개 요소를 이 분류 체계에 적용해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기관장은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책임을 갖는다.’는 요소는 원칙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관장은 정보자원관리를 조직목표에 부합하도록 총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소는 역할로 볼 수 있다.

VI. 결 언

본 연구는 IT 관리상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을 소개하고 공공 부문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IT관리상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정보자원관리 및 IT 제대로 관리하기 노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정보화 관련 미국 및 국내의 법을 분석하여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적 요소와 기본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화 관련 법체계의 정비 노력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나아가서 민간 부문에서도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IT관리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여기서 제시하는 정보자원관리 또는 IT 제대로 관리하기 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아키텍처 노력은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최근 아키텍처 정보화를 추진 준비 중인 국내 일부 공공 기관 및 업체에게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디지털 타임즈 2004.12.16; 김성근 2004).

그러나 이들 법적 요소를 담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지 기존 법의 개폐 작업을 통하여 구현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안고 있다. 향후에는 주관 및 관련 부처의 정책 방향과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김동욱,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7.
- 김성근, “아키텍처 정보화(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한 고찰”, 디지털행정, 통권 제 95호, 2004, 3.
- 디지털 타임즈, “법정부 EA 전략이 없다”, 디지털 타임즈, 2004. 12. 3.
- 디지털 타임즈, “법정부 EA 사업에 대한 제언”, 디지털 타임즈, 2004. 12. 8.
- 디지털 타임즈, “IT 거버넌스 고민할 때”, 디지털 타임즈, 2004, 12, 16.
- 유시완, 이연희, 보건복지분야 공공정보자원 현황 및 정책과제, 1999.
- 전자신문, “위기의 SW업계 정부에 ‘SOS’”, 전자신문, 2004. 12. 17.

- 전자신문, "ITA/EA법 제·개정 합의 또 무산", 전자신문, 2004.11. 29.
- 전자신문, "ITA가 뭐길래", 전자신문, 2004. 11. 24.
- 정국환, 정보자원관리체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1996.
- 황주성, 권현영, 공공정보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황종성, 정보자원관리 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2002.
- Aponovich, David, "The CFO: CIO's New Best Friend?", *CIO Update*, 2002. <http://www.cioupdate.com/research/article.php/973581>.
- Beachboard, J., "Asses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from a Bureau's Perspective",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14, No. 13, 1997, pp.235-253.
- Bertot, J., "The Impact of Federal IRM on Agency Missions: Findings, Issues, and Recommendation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14, No. 13, 1997a, pp. 291-311.
- Bertot, J., "Key Issue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Federal IRM: A View from the Trench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14, No. 13, 1997b, pp.271-290.
- Bertot, John, McClure, Charles R., Ryan, Joe, and Beachboard, John, "Federal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Integrating Information Management and Technology", In P. Hernon, C. R. McClure, & H. Relyea. (Eds.), *Federal Information Policies in the 1990s*,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97, pp.105-135.
- Brown, Mary,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Coming Millenium: A Management Imperative", *Public Administration & Management*, Vol. 5, No. 1, 2000, pp.67-85.
- Carr, Nicholas, "IT Doesn't Matter", *Harvard Business Review*, May 2003, pp.41-49.
- GAO, "Executive Guide: Improving Mission Performance through Strategic Information Management and Technology", 1994.
- Kerr, J. M., *The IRM Imperative*, John Wiley and Sons, 1991.
- Khandelwal, V. K., "An Empirical Study of Misalignment Between Australian CEOs and IT Managers",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Vol. 10, No. 1, 2001, pp.15-28.
- Lutchen, Mark D., *Managing IT As a Business*, John Wiley & Sons, 2004.
- McClure, D., "Improving Federal Performance in the Information Era: The Information of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Use of 1996",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14, No. 13, 1997, pp.255-269.
- McLeod R. and K. Brittain-White, "Incorporation of IRM Concepts in Undergraduate Business Curricula",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Vol. 1, No. 1, 1988, pp.28-37.
- Overby, S., "How to Run IT Like a Business", *CIO*, May 1, 2004.
- Power, Keith, "CFO: Friend or Foe?", *CIO*, August 17, 2002.
- Standish Group, "Extreme Chaos", 2001. http://www.standishgroup.com/sample_research/
- UK Cabinet Office, *Successful IT: Modernising Government in Action*, UK Cabinet Office, May 2000.
- Young, C., "Running IS Like a Business: Introducing the ISCo Model", *Gartner Report*, Jan. 16, 2003.
- Weill, Peter and Jeanne Ross, *IT Govern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4.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ume 7 Number 1

June 2005

A Comparative Analysis of IRM-Related Laws with US

Sung Kun Kim* · Nam Kyu Ahn** · Jin Sil Lee**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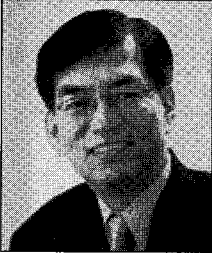
IT investment is continuously increasing. Its outcome, however, is not accomplished as easily as originally expected. There have a variety of efforts to overcome this dilemma. In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 was suggest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 for information & IT management. Accordingly, United States has been incorporating the IRM principles into information-related laws since 1980s. However, such efforts were insufficient in Korea. In this study we attempt to compare our information-related laws with United States laws with respect to major components of IRM. Based on this finding, we go one-step further to suggest ways to arrange a new legislation where the IRM would be a foundation for information & IT management.

Keywords: *Information-related Law,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Enterprise Architecture, e-government*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 Ang University, An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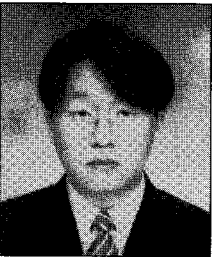
** Dept. of Bus. Admin.,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eoul

● 저자 소개 ●



김성근 (skim@cau.ac.kr)

New York 대학교에서 Information Systems 전공으로 Ph.D 학위 취득, New York 대학교 강사를 거친 후 중앙대에 부임함. 미국 국방성 전자상거래센터 연구원,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중앙대 전산원장 및 전산정보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 한국EA(Enterprise Architecture)협의회 대표위원으로 국내 주요 공공 및 민간 EA 프로젝트의 자문교수로 활동 중이다.



안남규 (whitederrick@empal.com)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MIS 전공으로 재학. 주요 관심분야는 Enterprise Architecture, ISP, 정보자원관리, 컴포넌트 기반 개발방법론 등이 있다.



이진실 (leejs@cau.ac.kr)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박사과정 수료. LG-EDS, 중앙대 전산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과학기술부 및 한국전산원 등의 ISP, 객체지향, CBD, 사업관리, EA 방법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 주요 관심분야는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 CASE 등이 있다..

논문접수일 : 2004년 10월 25일

2차 수정일 : 2004년 12월 28일

1차 수정일 : 2004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 : 2005년 1월 4일